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목 차>

1. 통합사업자 지정요건
2. 보급의무자 및 목표관리대상자의 자료제출의무
3. 계약시장제도 입찰의 평가기준
4.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의무이행 충당 등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작 성 자	이름	원중필
	담당부서 (과)	재생에너지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경수		연락처	044-201-5944
	과장	윤정원		이메일	feelleo01@korea.kr

2026. 09. 21.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 국장 성명 : 이경수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통합사업자 지정요건			
	2.규제조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11			
	3.위임법령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14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23~2026.11.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RPS 제도를 계약시장제도로 전환('27.1), 이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전주기 지원 등을 위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적절한 지정 자격 요건을 마련할 필요 ○ 이에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의 지정 요건을 구체화			
	7.규제내용	○ (안 제2조의11)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지정 요건 구체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안 제2조의11)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지정 희망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지정을 통하여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전주기 지원을 추진,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참여 여건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추진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전문인력, 신용도, 자본금 및 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실적 등 요건 충족에 비용 필요	○통합관리로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거래비용절감, 정보비대칭 완화,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 제고 등의 편익 기대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수·자격, 신용도 및 자본금 수준 등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향후 고시에서 정할 예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규제신설에 따른 비용을 신뢰성 있게 계량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11(통합사업자의 참여자격 등) ① 법 제12조의14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2조의14제5항에 따라 지정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12조의14제5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업 개발, 계약 시장 입찰 대행, 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유지보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신용도 및 자본금 등을 보유할 것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 기준과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의 지정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급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제도 적응과 안착을 위해 전주기 지원이 필요
- **(문제점)** 법률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와 연계한 소규모 설비 기준 정비 및 제도적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등 통합사업자 참여요건에 대한 규정은 미비
- **(정부개입 필요성)** 소규모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참여, 입찰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지정 등 통합사업자 참여요건 마련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통합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신설
	내용	소규모 사업자의 전주기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 등 통합사업자 참여요건 마련
규제대안2	대안명	통합사업자의 지정요건 미비
	내용	소규모 사업자의 전주기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 등 통합사업자 참여요건 미반영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충분하 기업을 종합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소규모 사업자 전주기	○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요건 확보, 지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 등 규제 발생

	지원 가능	
규제대안2	○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종합서비스 기업 지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 지원 가능	○ 태양광 분양 사기, 부실한 소규모 사업자 및 설비 관리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 높음(참여기업 사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VPP-RESCO 업체 등 (통합사업자 등 관련)	○ '26.3(2회) ○ 토론회, 대면 ○ 토론회, 대면	재생e 종합서비스 기업 등 통합 사업자 관련 논의	의견 반영하여 법률 개정안, 시행규칙 마련
재생에너지 업체 등 (통합사업자 등 관련)	○ '26.3(1회) ○ 여의도 국회 ○ 토론회, 대면	재생e 종합서비스 기업 등 통합 사업자 관련 논의	의견 반영하여 법률 개정안, 시행규칙 마련
재생e 이해관계자 등 릴레이 회의 (통합사업자 등 관련)	○ '26.9(4회)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본부 등 ○ 간담회, 대면	재생e 종합서비스 기업 등 통합 사업자 관련 논의	의견 반영하여 법률 개정안, 시행규칙 마련
재생에너지 전문가 등 (통합사업자 등 관련)	○ '26.6~8(10회)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본부 등 ○ 간담회(정기 T/F), 대면	재생e 종합서비스 기업 등 통합 사업자 관련 논의	의견 반영하여 법률 개정안, 시행규칙 마련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대안선택)**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등 국정과제 이행과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정책 부합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법률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계약시장제도 참여 등 위해서 재생에너지 종합
서비스기업 등 통합사업자 지정요건 등 규정을 신설하는 ‘규제
대안 1’을 선택함
- **(선택근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계약시장제도 참여가 필수적인 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등 통합사업자 참여조건을 통해 적절한 사업자를
지정하여 전주기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이에, 지속적인 전문가, 협단체, 사업자 등 간담회 및 토론회, T/F 등을
거쳐 논의된 사안으로 현행 유지안 및 그 외 규제대안은 고려 불필요

3. 규제목표

-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등 통합사업자 참여요건 마련 등을 통하여 적기에 소규모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참여를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국정과제 연계)와 관련이 있으며,
- 이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및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분양 사기, 과도한 투자비 지출 등의 피해를 해소하여 건전한 재생에너지 산업 및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의 작동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 등 통합사업자 지정요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규제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규제 타당성 충분
- 더불어, 전문가, 재생에너지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도출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 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독일)** EEG(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직접거래사업자 등 전문 중개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 100kW 이상의 중소규모의 발전사업자가 도매시장에 전력을 직접 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사 사례 존재
-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망 운영기구(CAISO)는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팔거나 사려면 발전사업자가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해 반드시 '스케줄링 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지정)해야 하는 유사 사례 존재
- **(일본)** 일본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전력수요자와 직접 거래계약을 맺고 설비의 제어, 유지보수, 거래를 담당하는 RA(자원 중개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유사 체계 존재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타법사례

- **(전기사업법)** 1M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모아 발전량을 예측하고 전력시장에 대신 거래 및 입찰을 해주는 전기신사업을 등록토록 하는 유사 사례 존재
- **(분산에너지특별법)** 소규모 재생에너지, ESS, 수요반응 DR 자원을 분산에너지 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발전소(VPP)로 운영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록 등 유사 사례 존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다소비 사업자를 대신하여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 설계 및 시공, 유지보수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ESCO 사업자 지정 등 유사 사례 존재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통합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신설>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통합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인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지정 희망자는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지정 요청하게되며 이에 따라 수반되는 참여 요건 등은 수용성 있게 준수할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사항으로써 규제 순응도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지정 희망자는 참여자격을 갖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항으로 행정적 집행 가능성은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사항으로 재정적 집행가능성 충분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VPP-RESCO 등 통합사업자(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관련 간담회('26.3, 2회)
- 통합사업자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업계 토론회('26.3, 1회)
- 재생에너지 이해관계자 릴레이 간담회('26.9, 4회)
- 재생에너지 전문가 및 보급의무자 등 T/F('26.6~'26.8, 10회)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VPP-RESCO 업계 등 (통합사업자 등 관련)	○ '26.3(2회) ○ 토론회, 대면 ○ 토론회, 대면	재생e 종합서비스 기업 등 통합 사업자 관련 논의	의견 반영하여 법률 개정안, 시행규칙 마련
재생에너지 업계 등 (통합사업자 등 관련)	○ '26.3(1회) ○ 여의도 국회 ○ 토론회, 대면	재생e 종합서비스 기업 등 통합 사업자 관련 논의	의견 반영하여 법률 개정안, 시행규칙 마련
재생e 이해관계자 등 릴레이 회의 (통합사업자 등 관련)	○ '26.9(4회)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본부 등 ○ 간담회, 대면	재생e 종합서비스 기업 등 통합 사업자 관련 논의	의견 반영하여 법률 개정안, 시행규칙 마련
재생에너지 전문가 등 (통합사업자 등 관련)	○ '26.6~8(10회)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본부 등 ○ 간담회(정기 T/F), 대면	재생e 종합서비스 기업 등 통합 사업자 관련 논의	의견 반영하여 법률 개정안, 시행규칙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해당없음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대안별 장단점, 해외사례, 피규제자의 규모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등 국정과제와 연관된 정책의 부합성, 보급 현황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사업자 지정요건 등 규정 신설이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통합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수·자격, 신용도 및 자본금 수준 등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향후 고시에서 정할 예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규제신설에 따른 비용을 신뢰성 있게 계량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통합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신설>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지정 희망자
활동제목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지정 요건
비용항목	전문인력, 신용도, 자본금 및 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실적 등 요건 충족에 비용 필요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 본 규제는 법 제12조의14제1항 및 5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11에 따른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의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지정에 대한 세부 요건사항을 정하는 것임 ○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업자는 전문인력, 신용도, 자본금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관련 서비스 업무수행 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정요건 충족 및 신청·증빙 과정에서 일정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 다만, 전문인력의 수·자격, 신용도 및 자본금 수준 등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향후 고시에서 정할 예정이므로, 현재에는 지정 신청 예상기업 수 및 각 기업이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인력·자본 등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규제신설에 따른 비용을 신뢰성 있게 계량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동 지정은 모든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라, 소규모 설비의 통합사업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제도로, ○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사업개발·입찰·운영관리 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정보비대칭 완화 및 신뢰성 제고, 부실사업에 따른 피해완화,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 제고, 설비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성 향상 등의 편익이 기대됨.

	○ 이에, 시행규칙 단계에서는 비용편익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고시에서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 시 업계의 인력·자본금·사업수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추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기준을 설정할 계획임.
--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보급의무자 및 목표관리대상자의 자료제출의무		
	2.규제조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12 제2조의 13		
	3.위임법령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15 제12조의 16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23~2026.11.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목표관리대상자와 보급의무자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무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이행실적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		
	7.규제내용	○ (안 제2조의12) 목표관리대상자 지정·보급목표 설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보급목표 제출 및 전년도 보급목표 이행실적 제출 ○ (안 제2조의13) 보급의무자의 전년도 보급의무 이행실적 제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목표관리대상자(대규모 민간발전사 등), 보급의무자(발전공기업 등), 제2조의12 및 제2조의13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관계기관·법인 또는 사업		
	9.규제목표	○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의 산정·확정·이행실적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확보하여 제도의 객관성·예측가능성 및 이행관리의 실효성을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기존 사업·설비 운영 과정에서 보유·관리하는 자료와 이행실적을 제출하는 행정절차로, 별도 설비투자 등 직접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자료 정리·확인·제출을 위한 내부 행정업무가 발생할 수 있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세부기준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12(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대상자를 지정하거나 보급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발전설비 보유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14제2항 후단에 따른 전망치, 목표관리대상자가 보유한 발전설비의 총 설비용량 등을 고려하여 목표관리대상자별 다음 연도의 보급목표의 기준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목표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목표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준에 따라 보급목표를 설정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목표관리대상자와의 협의를 거쳐 보급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통보한다. 이 경우 보급목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확정하며, 목표관리대상자가 제출기한까지 보급목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표관리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현 행	개 정 안
	보급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보급목표는 조정한 연도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2조의14제2항 후단에 따른 전망치가 조정된 경우 2. 발전설비의 신설·폐지 또는 양도·양수 등으로 목표관리대상자가 보유한 발전설비의 총 설비용량이 변동된 경우 3. 전력수급 여건, 재생에너지 시장 상황 등이 현저히 변동되어 확정된 보급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목표관리대상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를 소명하여 보급목표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⑤ 보급목표의 이행은 목표관리대상자가 직접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관리대상자가 출자한 법인이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으로 한정한다)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제공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목표관리대상자는 법 제12조의15제2항 전단에 따른 전년도 보급목표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급목표의 설정·조정 및 실적의 인정기준, 그 밖에 재생에너지 보급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목표관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13(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량의 공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16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급의무량을 보급의무자가 보유한 발전설비의 총 설비용량,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급의무자별로 배분하고, 다음 연도의 보급의무자별 보급의무량을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보급의무자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급의무자와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정한 보급의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보급의무량은 조정한 연도부터 적용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한 보급의무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무자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의14제2항 후단에 따른 전망치가 조정된 경우 2. 발전설비의 신설·폐지 또는 양도·양수 등으로 보급의무자가 보유한 발전설비의 총 설비용량이 변동된 경우 3. 보급의무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를 소명하여 보급의무량의 조정

현 행	개 정 안
	을 요청하는 경우 ③ 보급의무의 이행은 보급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보급의무자가 출자한 법인이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④ 보급의무자는 전년도 보급의무의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급의무량의 산정·배분 기준, 이행실적의 인정 기준 및 확인 방법, 그 밖에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RPS 제도를 계약시장제도로 전환하면서 목표관리대상자와 공급의무자를 지정하고 각각 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또는 공급의무를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됨
- **(문제점)** 공급목표·보급의무의 설정 및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 발전설비 보유현황, 공급목표, 이행실적 등 기초자료를 일정한 시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제출 절차와 기한이 없으면 연도별 이행관리가 지연될 수 있음
- **(정부개입 필요성)** 연도별 목표·의무의 확정과 이행실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 시기와 절차를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선택)** 목표관리대상자 및 공급의무자의 공급목표·이행실적 자료 제출기한을 명확히 정하는 대안을 선택함
- **(선택근거)** 제출기한을 두지 않을 경우 대상자별 자료 제출시점이 달라져 다음 연도 목표·의무 확정 및 전년도 실적 검증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연도별 관리주기와 연계한 30일 또는 매년 3월 31일 등의 기한 설정이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발전 공기업 등 (보급의무 관련)	○ '26.4.~'26.7(3회)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본부 등 ○ 간담회, 대면	보급의무자 지정 및 보급의무량 등 논의	의견 반영하여 시행령 마련
재생에너지 업계 등 (보급의무/목표관리 안건 포함)	○ '26.3(1회) ○ 여의도 국회 ○ 토론회, 대면	보급의무/목표관리 등 관련 사항 논의	의견 반영하여 법률 개정안, 시행령 마련
재생e 이해관계자 등	○ '26.9(4회)	보급의무/목표관	의견 반영하여

릴레이 회의 (보급의무/목표관리 등)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본부 등 ○ 간담회, 대면	리 등 관련 사항 논의	법률 개정안, 시행령 마련
재생에너지 전문가 등 (보급의무/목표관리 등)	○ '26.6~8(10회)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본부 등 ○ 간담회(정기 T/F), 대면	보급의무/목표관 리 관련 제도 설계 전반 논 의	의견 반영하여 시행령 마련

3. 규제목표

-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 관련 자료를 적기에 확보하여 대상자별 목표·의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체계적으로 확인·관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자료제출은 목표관리 및 보급의무 이행관리와 직접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며, 제출시기도 연 1회 또는 목표기준 통보 후 일정 기간으로 설정하여 반복적·과도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함
- 대상자는 대규모 발전사업자·공공 발전사 등으로 기존 RPS 운영 과정에서 유사한 실적관리 및 자료제출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준수가 가능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미국)** 청정대기법에 근거하여 정유사나 연료 수입업자는 매년 가솔린이나 디젤에 바이오에탄올 등 재생연료를 일정량 이상 섞어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이때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에 정유사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비율을 산정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 공고하는 유사 사례 존재
- **(영국)** 전력 및 가스 명령(영국 가스법 및 전력법에 근거한 하위법령)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가스 및 전력 공급사에게 저소득층의 주택 단열 개선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목표량을 부여하고 이때 개별 공급사가 달성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량 및 단계, 이행절차 등을 산정하여 개별 통지 및 공고하는 유사 사례 존재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타법사례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500MW 이상 대형 발전사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RPS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때 연도별 공급의무량을 매년 1월 말까지 산정하여 확정·공고하는 등 유사한 사례 존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관리업체를 정하고 협의를 거쳐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절차적으로 조정하는 유사 사례 존재
-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 제조·판매사에게 연평균 전체 차량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판매하도록 목표를 부여하며, 그 대상은 매출액,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보급목표대상기업으로 지정하는 유사 사례 존재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대상자는 발전설비 보유현황과 사업 실적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제출자료가 연도별 목표·의무 확정 및 실적 인정에 직접 활용되므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인지와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제출된 자료의 접수·확인 및 대상자별 실적 관리는 기존 RPS 업무와 유사한 행정절차로 수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대규모 설비·시스템 투자를 요구하는 규제가 아니므로 재정적 집행상 특별한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발전공기업 등 보급의무 관련 간담회('26.4~'26.7, 3회)
- 보급의무/목표관리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업계 토론회('26.3, 1회)
- 재생에너지 이해관계자 릴레이 간담회('26.9, 4회)
- 재생에너지 전문가 및 보급의무자 등 T/F('26.6~'26.8, 10회)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발전 공기업 등 (보급의무 관련)	○ '26.4.~'26.7(3회)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본부 등 ○ 간담회, 대면	보급의무자 지정 및 보급의무량 등 논의	의견 반영하여 시행령 마련
재생에너지 업계 등 (보급의무/목표관리 안건 포함)	○ '26.3(1회) ○ 여의도 국회 ○ 토론회, 대면	보급의무/목표관리 등 관련 사항 논의	의견 반영하여 법률 개정안, 시행령 마련
재생e 이해관계자 등 릴레이 회의 (보급의무/목표관리 등)	○ '26.9(4회)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본부 등 ○ 간담회, 대면	보급의무/목표관리 등 관련 사항 논의	의견 반영하여 법률 개정안, 시행령 마련
재생에너지 전문가 등 (보급의무/목표관리 등)	○ '26.6~8(10회)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본부 등 ○ 간담회(정기 T/F), 대면	보급의무/목표관리 관련 제도 설계 전반 논의	의견 반영하여 시행령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해당없음

3. 종합결론

- 자료제출의무는 목표관리 및 보급의무의 연도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절차이며, 제출대상·내용·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계약시장제도 입찰의 평가기준		
	2.규제조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7		
	3.위임법령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14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23~2026.11.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의 경쟁입찰을 통해 한정된 공고 물량의 낙찰자를 선정하려면 사전에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 ○ 입찰가격 등 가격 요소뿐 아니라 주민수용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여도,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등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공익적 요소를 함께 반영 필요		
	7.규제내용	○ (안 제2조의7) 입찰 평가기준에 입찰가격 등 가격 요소와 주민수용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여도,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등 비가격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자부터 에너지원별 공고 용량 범위에서 낙찰자를 결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계약시장제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9.규제목표	○ 가격경쟁력과 함께 주민수용성, 산업기여도, 계통영향 등을 종합평가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의 안정적인 확대를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입찰 참여에 통상 필요한 인허가, 사업계획, 기자재, 계통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배점·증빙기준은 고시에서 정할 예정이므로 시행규칙 단계에서 추가 규제비용을 계량하기 어렵고,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7(계약 공고 및 낙찰자 결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14제2항에 따라 계약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 및 에너지원별 용량 2. 공고의 시기·방법 및 입찰 일정 3. 입찰 참여자격 및 참여 방법 4. 상한가격 또는 그 산정방식 5. 입찰의 평가기준·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6. 그 밖에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5호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입찰가격 등 가격 요소와 주민수용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여도, 전력 계통에 대한 영향 등 비가격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찰에 참여한 자를 제1항제5호의 평가기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원별 공고 용량의 범위에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부터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공고,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

현 행	개 정 안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 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계약시장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구체적인 평가·낙찰 기준 마련이 필요
- **(문제점)** 평가기준이 없거나 가격만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낮은 가격 제시 자체는 가능하나 주민수용성 부족, 국내 공급망과의 연계 미흡, 전력계통 수용성 부족 등으로 사업 지연·취소 또는 이행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며, 입찰 참여자 입장에서선 선정기준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
- **(정부개입 필요성)** 계약시장제도는 정부가 공고 물량과 상한가격을 정하고 구매의무자가 낙찰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인 만큼, 한정된 계약 물량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배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통 평가 원칙을 정부가 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비교)** 가격 요소만으로 평가하는 방안은 기준이 단순하고 입찰자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사업의 이행 가능성과 계약시장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수용성, 재생에너지 산업기여도, 계통영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
- **(대안선택)** 가격 요소는 물론, 주민수용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여도,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등 비가격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자부터 낙찰자를 결정하는 규제대안을 선택
- **(선택근거)** 계약시장제도의 목적은 단순한 최저가격 선정이 아니라 장기 계약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있으므로, 가격과 비가격 요소를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 제도 목적에 부합

- 이에, 전문가, 협단체, 발전사업자 등과 간담회 및 토론회, T/F 등을 거쳐 합의된 사안으로 현행 유지안 및 그 외 규제대안은 고려 불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太·風 입찰설명회	○ '24.8~9(2회) ○ 서울 삼성호텔 ○ 간담회, 대면	입찰 추진방안 등 업계 의견 수렴	의견 반영하여 고시·운영규칙 마련
太·風 입찰설명회	○ '25.3~4(2회) ○ 서울 삼성호텔 ○ 간담회, 대면	입찰 추진방안 등 업계 의견 수렴	의견 반영하여 고시·운영규칙 마련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	○ '26.2(1회)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본부 등 ○ 간담회, 대면	고정가격계약 제도 개선	의견 반영하여 고시·운영규칙 마련
재생e 이해관계자 등 릴레이 회의	○ '26.9(4회)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본부 등 ○ 간담회, 대면	비가격 지표 등 평가 방식	의견 반영하여 고시·운영규칙 마련
풍력 업계 간담회	○ '26.8(1회)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본부 등 ○ 간담회, 대면	입찰물량, 입찰 방식 및 평가 지표, 우대가격 등	의견 반영하여 고시·운영규칙 마련

3. 규제목표

- 가격요소 및 비가격 요소를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여 입찰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한정된 물량 내에서 선정함으로써 계약시장제도의 투명성·공정성과 재생에너지 보급의 이행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평가기준은 계약시장 입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행규칙은 가격 요소와 비가격 요소를 종합 반영한다는 기본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배점·평가방법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수단을 필요한 범위로 한정
- 주민수용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여도,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은 장기계약의 실제 이행가능성 및 계약시장 운영에 직접 관련된 요소로서 가격만으로는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목적과 수단 간 관련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영국) 정부 예산범위에 따라 입찰별로 낙찰 가격을 설정하고 프로젝트 지분, 공급망, 저탄소, R&D투자비 등 21개 비가격 요소만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Round4 입찰 기준)
- (덴마크) 정부와 민간 입찰로 구분하고 정부는 가격만 평가, 민간은 계통 계획, 프로젝트 개발 신청서 등 비가격 요소를 평가하여 선정
- (네델란드) 유사 발전 운영실적(25MW 이상), 품질, 용량, 공공비용, 보호 조치 등 비가격요소만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대만) 1차에서 비가격지표를 기준으로 자격평가(기술능력 60%, 금융 40%)를 하고 2차에서 가격평가를 추진하여 사업자를 선정
- (미국) 주별로 상이하나 비가격 요소를 평가(뉴저지 총점 50%, 뉴욕 30%, 코네티컷 25%, 메사추세츠 30%)하여 사업자를 선정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타법사례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RPS제도 운영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추진하여 가격과 비가격 요소(주민 수용성, 계통, 국내 산업 기여도 등)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
-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분산전원 입찰시 전력공급 가격뿐만아니라 추진역량, 공급 안정성, 실현가능성, 첨단기술 활용, 기반시설, 지역발전 연계 등 비가격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사업자를 지정하고 계약을 체결
-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법)** 수소입찰시장 개설하여 발전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소 구매 가격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송배전 계통 영향, 주민 수용성, 산업 생태계 기여도 등 비가격 요소를 평가하여 선정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계약시장 입찰 참여 여부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르며, 입찰 참여자는 공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받는 구조이므로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제시되는 경우 규제 준수 가능성은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계약시장관리기관을 통해 입찰 접수·평가·낙찰자 결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세부 평가항목 및 증빙자료는 고시로 구체화할 수 있어 행정적 집행 가능성은 충분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입찰 평가기준 설정 자체는 정부의 별도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규제가 아니며, 입찰 참여자의 추가 부담도 기존 사업자료를 중심으로 최소화할 수 있어 재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발전공기업 등 간담회('26.4~'26.7, 3회)
- 재생에너지 업계 토론회('26.3, 1회)
- 재생에너지 이해관계자 릴레이 간담회('26.9, 4회)
- 재생에너지 전문가 등 T/F('26.6~'26.8, 10회)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太·風 입찰설명회	○ '24.8~9(2회) ○ 서울 삼정호텔 ○ 간담회, 대면	입찰 추진방안 등 업계 의견수렴	의견 반영하여 고시·운영규칙 마련
太·風 입찰설명회	○ '25.3~4(2회) ○ 서울 삼정호텔 ○ 간담회, 대면	입찰 추진방안 등 업계 의견수렴	의견 반영하여 고시·운영규칙 마련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	○ '26.2(1회)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본부 등 ○ 간담회, 대면	고정가격계약제도 개선	의견 반영하여 고시·운영규칙 마련
재생e 이해관계자 등 릴레이 회의	○ '26.9(4회)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본부 등 ○ 간담회, 대면	비가격 지표 등 평가 방식	의견 반영하여 고시·운영규칙 마련
풍력 업계 간담회	○ '26.8(1회)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본부 등 ○ 간담회, 대면	입찰물량, 입찰 방식 및 평가지표, 우대가격 등	의견 반영하여 고시·운영규칙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계약시장 운영 후 입찰 경쟁률, 낙찰사업의 이행률 및 평가항목별 효과 등을 점검하여 필요시 고시상 세부 배점·평가기준을 보완

3. 종합결론

- 대안별 장단점, 해외사례, 피규제자의 규모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계약시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객관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가격 요소와 사업 이행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가격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며, 입찰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세부 기준을 고시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장제도 입찰의 평가기준 신설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의무이행 총당 등			
	2.규제조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			
	3.위임법령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23~2026.11.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법 제12조의5제5항 개정으로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총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의 구매방식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시행규칙 제20조의 구매·의무이행 방식은 기존 RPS 제도에서 지침·운영규칙 및 공급인증기관의 거래시스템을 통해 이미 운영해 온 내용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제도 전환 과정의 법적 명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규정 필요			
	7.규제내용	○ 기존 RPS에서 운영 중인 공급인증서 구매수단을 정부 입찰 고정가격계약, 자체계약 및 현물시장 구매로 구체화하고, 자체건설 설비 공급인증서의 우선 활용 노력 및 의무이행에 총당 가능한 공급인증서의 기간 기준을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공급의무자(현행 29개사) ○ (이해관계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 공급인증서 거래 참여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기존 RPS 의무이행 방식을 법령상 명확히 하여 공급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의무이행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RPS 일몰·전환 과정에서 기존 거래방식의 연속성과 시장 안정성을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공급인증서 구매를 위한 계약 체결, 현물시장 운영 소요 비용 등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20조는 현행 RPS 제도에서 이미 운영 중인 정부 입찰 고정가격계약, 자체계약 및 현물시장 구매 등 기존 구매·의무이행 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임 ○ 따라서 규제 신설에 따른 피규제자의 추가 직접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운영방식의 법적		

		근거와 의무이행 인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급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15.규제정비 계획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의무 이행 총당 등) ① 법 제12조의5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구매한 경우"란 공급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구매한 경우를 말한다. 1. 공급인증기관의 공고를 통해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경우 2.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경우 3. 공급인증기관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개설한 현물시장을 통해 구매한 경우 ② 공급의무자는 자체 건설한 설비에 서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에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의무공급량에 총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는 해당 설비에 대한 공급인증서 최초 발급개시일이 속한 월부터 20년까지 발급된 공급인증서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의무공급량에 총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RPS 제도 개편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법 제12조의5제5항이 공급의무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구매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급인증서를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도록 변경됨.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의무이행에 인정되는 구매방식과 공급인증서의 의무이행 인정기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현황)** 현행 RPS 제도에서 공급의무자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이행에 활용하는 실제 거래방식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통해 공급인증기관 공고를 통한 정부 입찰 고정가격계약, 자체계약, 현물시장 구매의 세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음
- **(문제점)** 법률에서 의무이행에 인정되는 구매방식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의무이행 실적 인정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개입 필요성)** 현재 실제 이용되는 세 가지 구매방식을 모두 법령상 인정방식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상위법의 위임을 구체화하고, RPS 일몰·전환 과정에서도 기존 거래관행을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예측가능성과 행정상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구매방식 구체화
	내용	기존 RPS에서 운영 중인 공급인증서 구매수단을 정부 입찰 고정가격계약, 자체계약 및 현물시장 구매로 구체화하고, 자체건설 설비 공급인증서의 우선 활용 노력 및 의무이행에 충당 가능한 공급

		인증서의 기간 기준을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의무공급량에 총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구매방식 미설정
	내용	법률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무이행 인정 구매방식을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음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현행 RPS에서 실제 활용 중인 구매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공급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의무이행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존 거래방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	구매방식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
규제대안2	구매방식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제도 운영상 형식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음	법률이 부령에 위임한 구매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아 의무이행 실적 인정 여부가 불명확해지고, 공급의무자와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처리 기준 및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2026. 3. 12. 국회 토론회	RPS 일몰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거래 연속성 및 충격 최소화 필요	기존 실제 거래방식 3개를 모두 인정하고 현물시장을 2029년 말까지 경과 운영 자체건설.
RPS 공급의무자	2026. 9. 1. ~ 2026. 9. 2. 서울 간담회	RPS 일몰 전환에 따른 의무이행 여건 확보 및 세부 방안 등 필요	외부구매에 대한 방식 명확화 및 현물시장을 2029년 말까지 경과 운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협단체	2026. 9. 15. 서울 간담회	기존 사업자의 안정적인 계약 전환 및 예측가능한	법령에 의무이행 인정 구매방식을 명확히

		제도 운영 필요	규정하고 계약방식 전환기간을 부여
--	--	----------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대안선택) 현행 RPS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공급인증기관 공고를 통한 정부 입찰 고정가격계약, 자체계약 및 현물시장 구매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기존 의무이행 관리기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규제대안1을 선택
- (선택근거) 새로운 거래방식이나 자격요건을 추가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가 이미 이용해 온 방식과 관리체계를 법령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상위법 위임을 이행하면서도 규제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임. 현물시장 구매도 법률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함에 따라, 제도 전환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함

3. 규제목표

- 기존 RPS에서 활용해 온 공급인증서 구매·의무이행 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하여 공급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상 일관성을 확보하고, RPS 일몰·전환 과정에서 기존 거래관행의 연속성과 시장 안정성을 유지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상위법이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의 구매방식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직접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 인정 가능한 구매 방식 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입찰 고정가격계약·자체계약·현물시장 구매 등 기존 거래수단을 인정하고, 자체건설 공급인증서 우선 활용은 노력의무로 규정하며, 현물 시장도 2029년 말까지 경과 운영하고, 의무이행 공급인증서의 인정기간도 현재 RPS 제도의 투자비 회수기간 및 고정가격계약 기간을 감안하여 20년으로 하되, 고시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전환에 따른 경직성과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함
- 따라서 법률의 위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존 제도 운영 기준을 법령화한 것으로 규제목적에 비해 수단이 과도하지 않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 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국가별 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및 인증서 거래제도의 구조가 상이하여 시행규칙 제20조의 구매수단 열거와 직접 대응하는 해외 입법 사례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타법사례

- 법률의 위임으로 제정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현행 RPS 제도 하의 공급인증서 거래제도에서도 정부 입찰 고정가격계약, 자체계약, 현물시장 매매가 실제 공급의무자의 구매방법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REC 가중치 설계 시 투자비 회수기간 및 정부 입찰 고정가격계약기간도 20년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구매방식 구체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구매방식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공급의무자는 현재도 정부 입찰 고정가격계약, 자체계약 및 현물시장을 통해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이행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규제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준수 가능성이 높음
- 새로운 거래수단이나 별도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절차를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이므로 규제순응을 위한 추가 준비기간이나 내부체계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공급인증기관은 기존에도 정부 입찰 고정가격계약, 자체계약, 현물시장 거래내역과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실적을 관리하고 있어, 현행 전산시스템과 업무체계를 활용하여 구매방식별 의무이행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행정적 집행 가능성이 충분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새로운 조직·정보시스템 구축이나 별도 대규모 예산을 요구하는 규제가 아니며, 기존 RPS 의무이행 관리체계 내에서 집행 가능하므로 재정적 집행가능성도 충분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026. 3. 1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 대상 국회 토론회
- 2026. 9. 1. ~ 2026. 9. 2. RPS 공급의무자 대상 간담회
- 2026. 9. 15.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협단체 등 대상 간담회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2026. 3. 12. 국회 토론회	RPS 일몰·전환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거래 연속성 및 충격 최소화 필요	기존 실제 거래방식 3개를 모두 인정하고 현물시장을 2029년 말까지 경과 운영
RPS 공급의무자	2026. 9. 1. ~ 2026. 9. 2. 서울 간담회	RPS 일몰·전환에 따른 의무이행 여건 확보 및 세부 방안 등 필요	자체건설· 외부구매에 대한 방식 명확화 및 현물시장을 2029년 말까지 경과 운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협단체	2026. 9. 15. 서울 간담회	기존 사업자의 안정적인 계약 전환 및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 필요	법령에 의무이행 인정 구매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방식 전환기간을 부여

2. 향후 평가계획

- 해당없음

3. 종합결론

- 본 규제는 법률이 부령에 위임한 공급인증서 의무이행 인정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형식상 시행규칙에 새로 규정되지만 핵심 내용은 기존 RPS 제도에서 지침 · 운영규칙 및 공급인증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이미 운영되어 온 거래·의무이행 기준을 법령상 명문화하는 성격임

- 새로운 시설·인력·수수료·제출서류나 거래수단 전환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아 규제 신설에 따른 추가 직접비용은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하며, 기존 운영기준의 법적 명확성과 제도전환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현물시장 경과운영 및 고시 예외를 통해 제도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도 완화할 수 있으므로 규제의 필요성과 비례성이 인정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의무공급량에 총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구매방식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시행규칙 제20조는 현행 RPS 제도에서 이미 운영 중인 정부 입찰 고정가격계약, 자체계약 및 현물시장 구매 등 기존 구매·의무이행 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임
- 따라서 규제 신설에 따른 피규제자의 추가 직접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운영방식의 법적 근거와 의무이행 인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급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구매방식 구체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RPS 공급의무자
활동제목	RPS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구매방식 구체화
비용항목	공급인증서 구매를 위한 계약 체결, 현물시장 운영 소요 비용 등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본 규제는 현행 RPS제도에서 공급의무자가 공급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화하는 것으로 제1항에서 나열한 각호의 방법은 이미 공급의무자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경로를 명확화한 것 뿐이므로 신규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 정부입찰 고정가격계약, 자체계약, 현물시장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이 그간 RPS제도 운영을 통해 기구축되어 있어 별도 비용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 ○ 또한 REC현물시장 일몰기한을 '29년으로 설정하여 공급의무자가 REC 구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RPS 공급의무자
활동제목	RPS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구매방식 구체화
편익항목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공급인증서 구매방식 중 자체계약과 현물시장은 재생에너지법 및 하위법령의 명확한 근거없이 지침·운영규칙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이를 법령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 ○ RPS 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RPS 공급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현재 RPS 현물시장은 높은 가격 변동

	성에 노출되어 있어 공급의무자 입장에서 의무이행을 위한 비용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물시장을 일몰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방식으로 유도하게 되면 매년 의무이행을 위한 비용산출 및 관리가 용이
--	--